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55 |
|----------|-----|

제출년월일 : 2004. 4. 1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지방자치 조직의 획일화된 부서명칭 변경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구분하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연계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 관리 책임과 임무부여 등으로 조직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의 명칭을 변경 함(안 제3조).

- 자치행정과 → 행정과

나. 소관사무 일부 개정 함(안 제12조제1호)

-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삽입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경상남도 행정과-1614(2004. 2. 20)호와 관련임

4. 분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또는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과” 또는 “행정과장”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군수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u>자치행정과</u>·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재무과·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과·도시과·주민지원과를 둔다.</p> <p>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자치행정과장</u> | <p>제3조(설·과의 설치) ①----- ----- -----<u>행정과</u>----- ----- ----- ----- ----- -----</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형과 같음) 2. <u>행정과장</u> |
| <p>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관리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시설관리(환경기초시설·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업무 종합기획·조정 나. 공공시설민원에 관한 사항 다.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라.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정화조내부 청소관리업무 바. 하수 및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방안 모색 사.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환경시설운영을 위한 업무 차. 체육시설관리·운영 전반 | <p>제12조(소관사무)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 ----- -----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p> <p>타. 문화체육센터·고성종합운동장·고성실내체육관·구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업무</p> <p>파.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u><신 설></u></p> | <p>카. -----</p> <p>타. ----- ----- -----</p> <p>파. -----</p> <p>하. <u>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u></p> |